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는 치료보호기관은 일정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마약류 중독 여부에 관한 판별검사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의 개발·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14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를 마약류중독자 치료에 필요한 상담실 또는 재활훈련실 등의 시설 등으로 정하고, 전문교육의 개발·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국립정신병원, 정신건강 또는 중독 관련 학과·학부 등이 설치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으로 정하는 한편,

마약류 중독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별을 위하여 판별검사 기준의 하나인 심리검사를 진단으로 간소화하는 등 판별검사 기준을 완화하고,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에 대한 지역 재활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치료보호 종료 사실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 등에게도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2. 3. ~ 12.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치료보호기관 평가·취소)

- 규제 강화 2건(치료보호기관 설치·지정 기준 등)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판별검사 및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기 위하여 전문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설치·운영하거나, 공립병원이나 그 밖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법 제4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1. 마약류중독자 치료에 필요한 상담실 또는 재활훈련실 등의 시설
2. 그 밖에 마약류중독자 치료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장비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치료보호기관의 재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 대하여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년마다 평가하여 치료보호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2.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실적
3. 치료보호기관 종사자의 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 여부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료보호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으로 재지정한 경우
2.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치료보호기관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한 경우

제5조(전문교육 개발·운영) ① 법 제4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립정신병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또는 중독 관련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나 전공이 설치된 학교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독 관련 치료·교육·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의 개발·운영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의 개발·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를 “법 제40조제9항에 따른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와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도 소속 4급”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속 5급”으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중독자등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의뢰하고, 그 사실을 해당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를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중독자등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의뢰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정시설(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또는 소년원을 포함한다)”을 “교정시설등(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중독자등에게”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통보하고, 그 중독자등에게 해당 통보 사실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

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정시설등의 장은 석방하는 중독자등에 대하여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독자등의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치료보호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를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의뢰·통보”를 “의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9조제3항”을 “제9조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심리검사”를 “진단”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를 각각 “별지 제4호서식에 진단서 사본 또는 소견서 사본을 첨부하여”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40조제2항”을 “법 제40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통보

해야 한다.

제15조제2항 후단 중 “제5조제1항제3호”를 “법 제40조제10항제1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5조제2항제1호”를 “법 제40조제10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3조”를 “제13조제1항”으로, “10일”을 “1개월”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진단서 사본 또는 소견서 사본을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전단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의 제목 “(치료 상태 보고)”를 “(치료보호 결과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제13조”를 “제13조제1항”으로, “10일”을 “1개월”로, “치료 상태를 보고하여야 한다”를 “치료보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0일”을 “1개월”로, “치료 상태”를 “치료보호 결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보고해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의 동의를 받아 그 치료보호의 종료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
3. 법 제51조의6제1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제3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 2025년 1월 1일
2. 제4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재지정을 위한 평가 기준: 2025년 1월 1일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료보호기간 연장 보고 기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3월 31일 이전에 치료보호기간이 끝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치료보호 결과 보고·통보 기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3월 31일 이전에 치료보호기간이 끝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마약류중독자 등 []판별검사 []치료보호 의뢰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사용·중독 마약류		사용기간

의뢰인 (검사)	성명	소속기관명	전화번호
	의뢰사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중독자 등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치료보호기관의 장 귀하

마약류중독자 등 석방 사실 통보서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전화번호
	주소		
	사용·중독 마약류		석방일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마약류중독자 등의 석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교도소장(소년교도소장, 구치소장, 구치소 지소장,
치료감호시설의 장 또는 소년원장)

직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마약류중독자 등 치료보호 의뢰서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사용·중독 마약류		사용기간
	의뢰사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마약류중독자 등의 치료보호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교도소장(소년교도소장, 구치소장, 구치소 지소장,
치료감호시설의 장 또는 소년원장)

직인

치료보호기관의 장 귀하

치료보호 의뢰 동의서

본인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교정시설 등의 장이 치료보호를 의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마약류중독자 등 []판별검사 []치료보호 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개월	
신청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사용·중독 마약류			사용기간	
신청인 (본인 외)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전화번호	
	주소			마약류중독자 등과의 관계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마약류중독자 등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본인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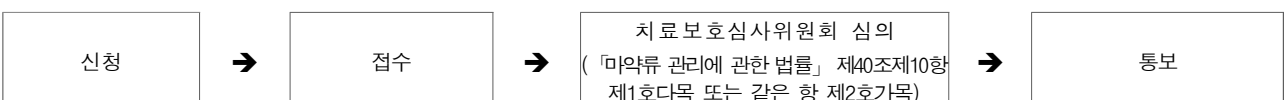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귀하

처리절차



마약류중독자 등 []판별검사 []치료보호 통보 · 보고서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전화번호
	판별검사일 년 월 일	판별검사 장소	사용 · 중독 마약류
	치료보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판별검사 결과 또는 치료보호 사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마약류중독자 등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위와 같이 통보 ·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치료보호기관의 장

직인

판별검사 · 치료보호 신청자 또는 마약류중독자 등의 배우자 · 부모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 결과 보고 · 통보서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전화번호
	사용 · 중독 마약류		
	판별검사 결과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 ·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치료보호기관의 장

직인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시자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검사

귀하

첨부서류	진단서 사본 또는 소견서 사본
------	------------------

치료보호 심의 결과 통보서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전화번호
치료 보호 기관	기관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심의 결과	치료보호 [] 승인 [] 불승인 [] 보류		
	치료보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개월)		
	※ 불승인 또는 보류 시 사유 기재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심의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직인

치료보호기관의 장 귀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간 연장 보고서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전화번호
	기존 치료보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장 필요 치료보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 · 중독 마약류
	연장 필요 사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기간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치료보호기관의 장

직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진단서 사본 또는 소견서 사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간 연장 심의 결과 통보서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전화번호
치료 보호 기관	기관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심의 결과	치료보호기간 연장 [] 승인 [] 불승인 [] 보류		
	기존 치료보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장 치료보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불승인 또는 보류 시 사유 기재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6조제4항에 따라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간 연장 심의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이
아
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직인

치료보호기관의 장 귀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결과 보고 · 통보서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전화번호
	치료보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치료보호 결과(치료 상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 ·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치료보호기관의 장

직인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치료보호 종료 보고서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전화번호
	주소	사용 · 중독 마약류	
	치료보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종료사유 [] 판별검사 결과 중독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 []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에 완치 [] 치료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 검사가 치료보호의 종료를 요청한 경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종료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치료보호기관의 장

직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치료보호 종료 통보서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전화번호
	주소		사용 · 중독 마약류
	치료보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종료사유 [] 판별검사 결과 중독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 [] 치료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에 완치 [] 검사가 치료보호의 종료를 요청한 경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라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종료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직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

귀하

치료보호 종료사실 통보 동의서

본인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라 치료보호 종료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치료보호기관의 설치·지정 등) ① (생략) ②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판별검사 및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기 위하여 전문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설치·운영하거나, 공립병원이나 그 밖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다음의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u> 1. <u>판별검사에 필요한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장비</u> 2. <u>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u> 3. <u>그 밖에 마약류중독자 치료</u>	제3조(치료보호기관의 설치·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판별검사 및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기 위하여 전문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설치·운영하거나, 공립병원이나 그 밖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u>

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장비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을 설치하거나 지
정한 경우에는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설
치)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보
건복지부에 중앙치료보호심사
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
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이하 “지
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법 제4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1. 마약류중독자 치료에 필요한
상담실 또는 재활훈련실 등의
시설
2. 그 밖에 마약류중독자 치료
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장비

제4조(치료보호기관의 재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
대하여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년마다
평가하여 치료보호기관으로 재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2.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실적
3. 치료보호기관 종사자의 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 여부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제5조(각 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의 기
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판별검사의 기준에 관한 사
항
3. 제3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
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
검사에 관한 사항
4.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시
작·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

치료보호기관의 평가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
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
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
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치료보호기관
으로 재지정한 경우
2.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치료
보호기관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한 경우

제5조(전문교육 개발·운영) ①

법 제4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기관을 말한다.

1. 국립정신병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또는
중독 관련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나 전공
이 설치된 학교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

<u>장에 관한 사항</u> 5. 그 밖에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치료보호 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2.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 ① <u>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u>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③ (생략) ④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u>시·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u>으로서 정	<u>독 관련 치료·교육·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u> 4. 그 밖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의 개발·운영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의 개발·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 ① <u>법 제40조제9항에 따른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u> (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와 <u>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u> (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u>
---	---

신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시·도 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 ⑦ (생략)

제7조(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회의 등) ①·② (생략)

③ 각 위원회는 회의록(특정인의 치료보호 또는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9조(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의뢰 등) ① 검사는 마약류중독자 또는 마약류중독자로 의심되는 사람(이하 “중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할 필요가 있거나 중독 여부를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중독자등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

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속 5급 -----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회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9조(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의뢰 등) ① -----

--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중독자등

를 의뢰하고, 그 사실을 해당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교정시설(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또는 소년원을 포함한다)의 장은 중독자등을 석방할 때에는 그 중독자등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중독자등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신 설>

③ 중독자등 본인과 그 배우자·직계존속·법정대리인은 중독자등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

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의뢰해야 한다.

② 교정시설등(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통보하고, 그 중독자등에게 해당 통보 사실과 -----.

③ 교정시설등의 장은 석방하는 중독자등에 대하여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독자등의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치료보호를 의뢰할 수 있다.

④ -----

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
의 장에게 판별검사 또는 치료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
호의 의뢰·통보 및 신청은 별
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
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독자등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 의뢰·통보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중독자등
에게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게 해야 한다.

② (생략)

③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독자등이 판
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 치료보호기관
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
라 ----- . 이 경우 본
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에는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삭 제>

제10조(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①

----- 제4항-----

----- 의뢰-----

----- .

② (현행과 같음)

③ -----

그 일시·장소 및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하고, 그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9조제3항에 따라 중독자등의 배우자·직계존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신청한 경우: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신청한 사람

2. (생략)

④ (생략)

제11조(판별검사의 기준 등) ①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판별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생략)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 및 심리검사 결과 마약류를 병적으로 사용하여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거나 금단 증상 또는 신체적·정신적 의존 증상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

1. 제9조제4항-----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판별검사의 기준 등) ① -----

----- 각 호의 어느 하나 -----
에 해당하는 -----
-----.

1. (현행과 같음)

2. -----
---- 진단 -----

② (생 략)

제12조(판별검사의 결과 보고) ①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판별검사 결과를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판별검사 의뢰에 따라 판별검사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게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판별검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치료보호의 실시) 법 제40

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판별검사 결과 마약류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해당 위원회의 심의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판별검사의 결과 보고) ①

-- 별지 제4호서식에 진단서 사본 또는 소견서 사본을 첨부하
여 -----

-----.

② -----

----- 별지 제4호서식에
진단서 사본 또는 소견서 사본
을 첨부하여 -----
-----.

제13조(치료보호의 실시) ① 법

제40조제7항-----

를 거쳐 치료보호기간을 정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해야 하며, 시
· 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
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
야 한다.

<신 설>

제15조(중증 마약류중독자의 치료
보호 특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 마약류
중독자에게 제3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
복지부장관은 제5조제1항제3호
의 사항에 관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제5조
제2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
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위원
회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4호의
2서식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중증 마약류중독자의 치료
보호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법 제40조제10항
제1호다목-----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법 제40
조제10항제2호가목-----

중증 마약류중독자에게 제3조 제2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제16조(치료보호기간의 연장) ①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마약류중독자가 제13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간을 넘어 치료보호를 계속하여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기 10일 이전에 그 사유 및 연장기간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③ (생략)

<신설>

④ (생략)

제17조(치료 상태 보고) ①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간(제16조에 따라 치료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이

-----.

제16조(치료보호기간의 연장) ①

----- 제13조제1항-----

----- 1개월 -----
----- 별지 제5호서식에
진단서 사본 또는 소견서 사본
을 첨부하여-----.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제2항 전단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5
호의2서식에 따라 치료보호기
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7조(치료보호 결과 보고) ①
----- 제13조제1항-----

끝나기 10일 이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마약류중독
자의 치료 상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약류중독자가 완치되었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9조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의뢰에 따
라 치료보호한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기 10일 이
전에 해당 검사에게도 치료 상
태를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치료보호의 종료) ① (생
략)

②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제1항
에 따라 치료보호를 종료한 때
에는 그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
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
는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 설>

----- 1개월 -----

---- 치료보호 결과를 보고해
야 한다. -----

-----.

② -----

----- 1개월 -

----- 치료보호
결과-----.

제18조(치료보호의 종료) ① (현
행과 같음)

② -----

----- 별지 제7
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

③ (생략)

<신설>

사는 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의 동의를 받아 그 치료보호의 종료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

3. 법 제51조의6제1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제3항에 따른 치료보호

	<u>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 2025</u> <u>년 1월 1일</u> <u>2. 제4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u> <u>기관의 재지정을 위한 평가</u> <u>기준: 2025년 1월 1일</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연 락 처	(044) 202 - 3871